

『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
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8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9월 10일

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지난 2012. 1. 17일 개정된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규모별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2012. 4. 9일 현행 조례가 개정 시행중이나,
-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최근의 판례에 따라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(안 제3조)

-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부여 (안 제14조의2제1항)
 - － 영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: ‘시장은 ~ 명할 수 있다.’
 - － 영업제한의 범위
 -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
 - 의무휴업일 지정 :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
-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4조의2제2항)

라. 참고사항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본 조례안은, 2012.1.17일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개정에 따라,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4.9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최근의 타 지자체 판례에 따라,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,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
- 주요 개정내용은, “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” 조항의 “명하여야 한다”를 “명할 수 있다”로 하고, 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”를 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”로, “매월 2일, 두 번째·네번째 일요일로 지정”을 “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”로 하고,

-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여,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,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,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업계에 대한 의견청취 등, 행정절차 이행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